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기타소득자 파일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0]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국세청(홈택스)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1. 2018. 2. 13.(전주대학교) 2. 2018. 2. 6.(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하여 기타소득자 파일 형태로 제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1. 국세기본법 65조의7,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3. 소득세법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1. 기타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번호, 은행명, 거래일자, 금액		
<p>「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p>			